

••• 2021/1/25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·計·經營 戰略

코로나 HI대면시대의 회계환경 변화와 2020년분 결산 외부감사 시 주의사항 (금융감독원 안내)

- 1. 핵심공통요약 : ① 회사 책임으로 재무제표 작성해 <u>감사전 재무제표 제출</u>(금융당국) ② 자산 5천 이상 의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도 외감대상 ③ 모든 상장사는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 기재함 ④ 매년도의 회계감리 중점사항 확인 · 대비 ⑤ 과거년도 <u>회계오류는</u> 발견 즉시 <u>정정공시</u>함
- 2. 코로나19 장기화와 비대면 untact 감사상황(기존 현장대면 → 비대면 대체적 절차)
- ① 감사인 격리조치 등 : 재고실사입회 → 실시간 화상중계기술(zoom 등)로 재고실사 관찰
- ② 감사인 국외방문 불가: 해당 국가 적격회계법인 재고자산 실사입회, 현지 회계법인의 해외종속회사 감사결과 활용
- ③ 감사증거 원본 · 실물 접근불가 : 사본문서의 형식과 내용이 원본문서에 충실한지 추가적 감사절차(온 라인 스캔과정, 드론 촬영, zoom 카메라, 원본 문서의 작성 · 보관 · 확인의 인증절차 판단)
- ④ 코로나 영향받는 자산의 손상검사와 회수 가능액 추정
- 손상 징후는 회수가능액 추정하여 차액의 손상반영
- 코로나로 시장 불확실성 증대 → 미래현금흐름 예측 어려움 → 시장이자율 상승, 자산손상인식 → 감사 인은 감사위험 대응해 보수적 관점 견지 : 금감원과 한공회의 감독지침 활용
- 3. 감사전 재무제표 자기작성제출 :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사전 제출
- ① 제출의무: 상장법인,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대법인, 금융회사 등
- ② 기본 재무제표, 현금흐름표, 주석
- ③ 미제출공시 : 금융감독원의 지정감사됨
- ④ 감사인 대리작성, 자문 금지 → 외부 제3회계법인에게 PA(Private Accounting) 위탁
- ⑤ 제출기한 : 결산주총 6주전(3월 29일 주총이면 2월 14일까지) 제출해야 함.
- 4. 상장사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감사준비(회사 대표가 운영책임, 내부감사가 운영실태 평가, 외부감사인 의 감사 · 검토 등)
- · 상장회사(2020년은 자산 5천억, 2021년은 1천억원 이상, 2022년부터는 모두)
- o 감사방법 :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질문, 문서검사, 재수행, 관찰 등 엄격검증 실시함.
- 5. 감사인은 피감상장회사와 협의해 핵심 감사사항(KAM, key audit matters)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
- 목적:회사의 위험요인을 정보이용자에게 알리며, KAM 선정이유·왜곡위험·감사절차를 기재함.
- 예시 : ① 잘못 표시될 위험 높은 분야(수익인식기준 등) ② 경영진의 중요한 판단 영역 ③ 불확실성 높은 추정액 ④ 당기의 중요한 거래나 사건의 감사영향효과 등
- 6. 금감원이 매년 선정하는 중점심리 회계쟁점 등의 신중처리
- 재고자산 : 실질손상, 가격하락, 진부화, 원가상승(저가법 적용하고 순실현가능가치 평가)
- · 무형자산(입증 가능액을 자산화, 합리적 회수가능액 측정하여 손상평가함)
- 국외매출(국내거래보다 신용위험 · 운송위험 높아, 거래상대방의 실재성 입증, 매출액의 실질반영 : 총 액, 순액 등)
- 이연법인세(세무조정 차이, 미사용결손금, 세액공제 등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어야 가능함)
- 7. 회계오류 예방과 과거오류 수정공시
- ① 적정재무제표와 공정감사 책임 → 회계기준 착오 위반시 → 전기수정·공시(경감 등)
- ② 전기와 당기 감사인간의 회계·감사 의견차이 : 전기오류 수정 협의회조율 → 수정
- ③ 회사가 회계기준 몰라 오류처리 → 수정재공시 자체가 신뢰도 저하(사전예방 위해 금감원 지적사례를 참고함)

고객 담당자: